하남2지구 다사로움1단지[국민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현장접수만 가능, 인터넷 접수 없음)

광주광역시 코로나19 방역대응체계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되어 예비입주자 모집을 재개합니다.

○ (공급일정)

구분	최초공고	변경
공고일	'20. 06. 26.(금)	'20. 08. 12.(수) [최초공고일(기준일) 변경 없음]
신청·접수	'20. 07. 14.(화) ~ 07. 15.(수) [10:00~16:00] (현장 접수)	'20. 08. 26.(수) [1순위], '20. 08. 27.(목) [2~3순위] [10:00~16:00] (현장 접수)
예비입주자 대기순위 추첨	'20. 09. 24.(목) [10:00]	'20. 11. 03.(화) [10:00]
예비입주자 대기순위 발표	'20. 09. 24.(목) [14:00]	'20. 11. 03.(화) [14:00]

2019.09.27.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 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됩니다.

우리 공사에서는 [하남2지구 다사로움1단지(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관련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홈페이지(www.gmcc.co.kr 분양·임대정보-임대주택안내-임대가이드) 및 전화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 누락 또는 부정확한 정보제공 등에 기인한 잘못된 상담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 미 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신청과 관련한 상담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읽어보시고 필요시 공사방문을 통한 직접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최초입주자 모집공고(2008년) 및 추가모집 후 계약해지 등으로 발생한 잔여세대 공급을 위한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입니다. **입주자모집 최조 공고일은 2020. 6. 26.(금)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매연·분진·악취·소음·폐기물 등 주변의 생활환경 오염으로 입주 후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 검증**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입주부적격자에 관한 사항**
 주택, 소득, 자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 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 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 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 시 유효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이 발생합니다.

1 주택단지 개요

단지명	단지 주소	건물 현황
하남2지구 다사로움1단지	광주 광산구 목련로21번길 45 (산정동, 다사로움1단지)	9개동 886호

2 임대대상 및 조건

공급형별(㎡)	전용면적(㎡)	전체세대수(886)	기존예비자(명)	모집인원(명)	임대조건(원) 구분	임대보증금 계	계약금	잔금	월임대료	구조 및 난방	최초입주
66	48.04~49.96	676	16	270	표준	28,605,000	3,000,000	25,605,000	171,300	계단식 및 지역난방	2009년 5월
					전환	34,823,000	3,000,000	31,823,000	142,800		
79	59.5964	210	4	84	표준	34,823,000	5,000,000	29,823,000	238,600		
					전환	43,530,000	5,000,000	38,530,000	198,600		

- 동일 형별 임대조건은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일괄 공급**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기존 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퇴거세대에 입주하게 되므로 **도배, 장판 등 내부 시설물이 최초 입주시의 상태와 다르거나 일부 노후화**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기 대기중인 예비자의 후순번이 되며,** 공가 발생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체결 하므로 **실제 아파트 입주시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위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임대조건이며,** 예비입주자의 계약체결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하여야 합니다.
- **전환보증금**은 계약자 **선택사항**이며, 계약체결 시 별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 주택의 기 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신청·접수 불가합니다.**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자)는 신청·접수 불가합니다.**

3 공급일정

신청일정 및 장소

신청대상순위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1순위	2020. 8. 26.(수) (10:00 ~ 16:00)	방문신청 (인터넷신청 불가)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임대주택팀(1층)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26]
2순위, 3순위	2020. 8. 27.(목) (10:00 ~ 16:00)		

※ 신청 면적에 따른 1순위 ~ 3순위 공고문 6 ~ 7p 참조

구 분	공고일	예비입주자 대기순위 추첨	예비입주자 대기순위 발표
일 정	'20. 08. 12.(수)	'20. 11. 03.(화) [10:00]	'20. 11. 03.(화) [14:00]
장 소	광주광역시도시공사 홈페이지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임대주택팀(전산추첨)	광주광역시도시공사 홈페이지

※ **예비입주자 대기순위 추첨 및 발표일은 입주자격 검증 일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변동시 광주광역시도시공사(홈페이지)-공사소식-공지사항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4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20.06.26.)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자(단,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table>
<tr><td>무주택</td><td>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td></tr>
<tr><td>세대구성원</td><td>
■ 세대구성원의 범위
<table>
<tr><th>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th><th>비고</th></tr>
<tr><td>• 신청자</td><td></td></tr>
<tr><td>• 신청자의 배우자</td><td>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td></tr>
<tr><td>•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td><td rowspan="2">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td></tr>
<tr><td>•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td></tr>
<tr><td>•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td><td>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td></tr>
</table>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table>
<tr><td>외국인 배우자</td><td>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td><td rowspan="3">*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적상실자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하나(세대원 자격검증이 불가능하므로), 예외적으로 외국인 배우자에 대하여 입주자격을 검색하기 전 외국인 등록번호를 제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td></tr>
<tr><td>외국인
직계존·비속</td><td>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td></tr>
<tr><td>태 아</td><td>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td></tr>
</table>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td></tr>
</table>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신청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미성년자**(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단독세대주 제한

-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세대구성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혼인 중이 아닌 형제, 자매(단, 부모의 사망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 배우자(단,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외국인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 또는 체류지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함) ③ 임신중인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 가능.
- 세대구성원이 신청자와 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총 2명인 경우 단독세대주로서 전용면적 40㎡ 이상 신청 불가합니다.
- 중증장애인(「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단독세대주이지만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자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 등은 신청자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급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시에는 입주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세부기준**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th></tr>
<tr><td colspan="2">소득</td><td>
<table>
<tr><th>가구원수</th><th>월평균소득기준</th><th>참고사항</th></tr>
<tr><td>2인이하가구</td><td>3,065,866원이하</td><td rowspan="4">*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외국인 배우자와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6인가구(5,315,858원), 7인가구(5,774,868원)</td></tr>
<tr><td>3인가구</td><td>3,938,828원이하</td></tr>
<tr><td>4인가구</td><td>4,358,439원이하</td></tr>
<tr><td>5인가구</td><td>4,856,848원이하</td></tr>
</table>
</td></tr>
<tr><td rowspan="2">자산</td><td>총자산가액</td><td>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8,800만원 이하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기타자산가액-부채)</td></tr>
<tr><td>자동차가액</td><td>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468만원 이하</td></tr>
</table>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로 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 **태아**, **동일주소 배우자의 혼전자녀**도 **세대구성원**이므로 **가구원수에 포함**되고 소득, 자산의 **검증대상**이 됩니다.(태아는 성격상 자산검증 불가)
*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금융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입주자 선정절차

신청(현장) → 입주자격 조사 (소득·자산·주택소유 등) → 입주자격 부적격사유 소명 요청 (개별통보) → 소명 접수 및 심사 → 예비입주자 발표

- **해당 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 결과에 의함**
- **주택, 소득, 자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됨**

■ 선정방법 (전용면적 50㎡미만 주택)

선정순서 : 순위 → 배점 → 추첨

1.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 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산정

① 1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가 광주광역시인 자

② 2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가 연접지역(나주시, 담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인 자

③ 3순위 :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2 . 위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3.. 배점이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

■ 배점기준

배점항목	배점기준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 (광주광역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가. 1년 이상 3년 미만 : 1점 나.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다. 5년 이상 : 3점
연접지역 계속거주기간 (나주시, 담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계속 거주한 기간)	가. 1년 이상 3년 미만 : 1점 나.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다. 5년 이상 : 3점

■ 선정방법 (전용면적 50㎡이상 주택)

선정순서 : 순위 → 배점 → 추첨

1.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 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산정

①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②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2. 위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3. 배점이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

*** 청약저축 가입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 봄**

*** 청약납입횟수는 통장 납입횟수가 아닌 청약순위확인서에 의함**

*** 당첨되더라도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청약하는데 청약통장을 재사용할 수 있음**

■ 배점기준

배점항목	배점기준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가. 6회 이상 12회 이하 : 1점 / 나. 13회 이상 24회 이하 : 2점 다. 25회 이상 36회 이하 : 3점 / 라. 37회 이상 48회 이하 : 4점 마. 49회 이상 60회 이하 : 5점 / 바. 61회 이상 : 6점

5 구비서류 (모든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0. 06. 26.)이후 발행분만 유효)

- **모집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아야 함**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비고	부수
공통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공고문 붙임파일에서 내려 받은 후,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가능 •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 거부되며,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오류기재 시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1통
	금융정보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통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표시)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처리될 수 있음**	1통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광주도시공사 신청시 접수장소에 비치** (광주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	1통
	주민등록표등본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외국인배우자 동일주소 거주시,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 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본인신분증, 도장	**· 본인 신청시 :** 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 배우자 신청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 입증서류 **· 기타 대리인 신청시 :** 본인신분증,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본인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본인인감도장	1통
해당자	주민등록표초본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공급신청자 포함)** **※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1통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1통
	임신 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 월평균소득기준의 가구원수, 미성년자 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각1통
	(신청자의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신청 시 신청자 외에 세대구성원이 없고 외국인 배우자만 있는 경우 · 소득기준 산정시 외국인 배우자를 가구원수에 포함시키고자 할 때	
	중증 장애인 확인서	• 중증장애인이 전용면적 40㎡초과 50㎡미만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1통
	청약순위확인서	• **주택관리번호 :** 2020000986 • **한국감정원 청약Home 접속(www.applyhome.co.kr)을 이용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발급 가능(*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 **※ 청약순위 확인서에 표시된 순위는 실제순위와 다를 수 있으므로 납입횟수(인정회차)를 확인하여 반드시 입주자모집 공고문상 본인의 순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순한 납입증명서나 직인날인이 없는 서류는 탈락처리**	1통

⑥ 예비입주자 대기순위 결정 및 계약안내

■ 예비입주자 대기순위 결정 [2020. 11. 03.(화) 14:00이후]

- 접수기간 동안에 신청하신 국민임대주택 신청자에 한해 예비입주자 **대기 순위를 전산 추첨**합니다.
- 예비입주자 대기순위는 **전산** 추첨 후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gmcc.co.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기존 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퇴거세대가 발생할 경우 대기순위에 따라 우리 공사에서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는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입주안내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의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 계약금 납입확인증, 도장,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세대원(직계존·비속)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계약자가 **세대주**로 되어 있어야 함.
- 계약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 한하여 대리를 허용함(단 배우자이외의 자가 대리할 경우에는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인감도장 날인)을 제출해야 함.)

■ 대금납부방법

- **계약금 :** 계약체결 시 66㎡형 3백만원, 79㎡형 5백만원
- **잔　금 :** 계약체결일로부터 입주지정일 이내

* 입금계좌 : 광주은행 142-127-000070

⑦ 유의사항 (신청 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관련항목	유 의 사 항
임 대 대 상 및 조 건	• **이 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주택**으로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셔야 합니다.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갱신계약 시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 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 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 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설치에 따른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신 청 자 격	• 모집공고일 현재 관계법령에서 정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자)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이여야 합니다. • 신청 이후 신청자격에 대하여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니, 재확인기간(소명기간) 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에서 제외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릅니다.** • 이 임대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가 임대차기간 중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는 경우에는 당첨된 임대주택의 입주일까지 이 임대주택을 공사에 명도해야 합니다.
신 청 안 내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당첨자결정 및 계 약 안 내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홈페이지(www.gmcc.co.kr)에 발표하며, 예비입주자 순위는 홈페이지 **"대기자 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동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변동으로 인하여 입주안내를 받지 못해 계약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는 계약이전에 당해 세대를 방문하여 시설물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당해 세대에 방문하실 경우 사전에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입 주 자 선 정 (중복 입주 금 지)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해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계약해지 처리 됩니다.
기 타 사 항	• 허위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

	예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임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합니다. • 세대모형,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 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팸플릿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매연·분진·악취·소음·폐기물 등 주변의 생활환경 오염으로 입주 후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임대주택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금지]

◉ 임대주택은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입주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됩니다.**

◉ 허위서류 제출 등 불법적으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는 임대주택법 제41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불법적으로 임차권을 양도할 경우 수사기관에 의해 적발되어 처벌될 수 있으며, 정부와 공사에서도 특별조사반 운영 등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⑧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53조)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 및 '분양권등'의 범위

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나. 분양권등(「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경우)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 물 : 등기건물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이며 미등기인 경우 건축물대장상 처리일(건물등기부와 건출물대장상 날짜가 상이한 경우 먼저 처리된 날)
2. 분양권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상 공급계약체결일,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지분소유시에도 주택소유로 인정되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8호의 무허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⑨ 매매 외 상속, 증여 등의 방법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사업주체가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 신청을 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총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공급대상 공동주택 위치도



※ 주택평면도(팸플릿) : 우리공사 홈페이지(www.gmcc.co.kr) → 공사소식 → 자료실

임대문의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임대주택팀 : 062)600-6726, 6821~8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26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1층 고객행복센터)

2020. 8. 10.

광주광역시도시공사사장

하남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 신청서

접수번호	

1. 신청형별 : □ 66㎡(20평형) □ 79㎡(24평형)

2. 월평균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표시) □

3 신청인 인적사항(본인,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기재)

관계	성 명	생년월일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본인					

4. 신청인주소 : 우편번호()
(새도로명)

※ 빌라명・호 / 아파트명・동・호 반드시 기재

5. 연 락 처 : 핸드폰 1 : 핸드폰 2 :
신청인과의 관계 : 신청인과의 관계 :

6. 대리신청시 기재

대리신청인 : (인) 생년월일 : ()
연 락 처 : ()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회보장시스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는 **당첨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0. 8. . 신청인 : (인)

광주광역시도시공사사장 귀하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받은 광주광역시도시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국토교통부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광주도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등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구분	제공 동의	개인정보 내역
기본	☑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가족관계사항 - 입주자저축 가입내역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소득	□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	- 토지.주택.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해당여부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3. **[필수]** 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광주광역시도시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임대료 고지서 발행 대행사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항목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소득·재산·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거주자 실태조사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관계사항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	입주자 만족도 조사	성명, 연락처, 주소
카드사.결제대행사	임대료 결제 임대료 수납관리	주소, 계약자번호
금융결제원	임대료 결제(지로.자동이체)	성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지로번호
임대료 고지서 발행 대행사	임대료 고지서 발행	성명, 주소, 계좌번호, 임대료 등

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 체결 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약기간

4. **[필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 **[필수]** 본인은 위 2~4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광주광역시도시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6. **[필수]** 본인은 위 1~4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7. **[필수]**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였습니다.**

2020. 8. .

광주광역시도시공사사장 귀하

[붙임 3]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6. 20.> [앞면]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공공임대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자		-
주 소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신청자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1]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2] (서명 또는 인)
		-		
		-		
		-		
		-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의 세대주, 신청자와 세대주의 직계존속·비속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사항

1.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4]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무주택세대구성원 보유 자산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

구분		해당 여부	물건 소재지	금액	계약자	신청자와의 관계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예 □ 아니오 □		원	[임차인]	
				원	[임차인]	
	분양권	예 □ 아니오 □		원	[수분양자]	
				원	[수분양자]	
	비상장주식	예 □ 아니오 □		원	[주주(보유자)]	
				원	[주주(보유자)]	
	출자금/ 출자지분	예 □ 아니오 □		원	[출자자]	
				원	[출자자]	
부채	임대보증금	예 □ 아니오 □		원	[임대인]	
				원	[임대인]	

1. **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향후 확인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계약해지 등)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자산별 보유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가. 임차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공사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나. 분양권 : 해당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및 제출일 현재까지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대출금액이 포함된 조사일 현재까지 총 납부한 금액)
 다.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라.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마.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신청인 : (인)

2020년 8월 일

광주광역시도시공사사장 귀하

※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4(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주택법 제106조(과태료)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붙임 5] 기타대리인이 신청할 때 작성(신청인이 작성)

위 임 장

위임받는 자 (대 리 인)	성명	전 화 번 호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위 임 자 (위 임 인)	성명	전 화 번 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상기 위임인은 대리인에게 아래의 위임사항을 위임하며, 위임사실을 알리기 위해, 인감증명서를 첨부함과 동시에 동일한 인감도장을 날인합니다.

위 임 사 항

1. 위임장 용도 : 임대아파트 입주신청 및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2. 위임에 따른 서약 : 위임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위임받은 자의 착오 또는 부정행위로 인한 귀책에 대하여 귀 공사에서 임의 조치하여도 이의 없음

첨부 : 위임자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 1부, 위임받는자 신분증 1부.

2020 년 8월 일

위임자

(인감도장)

광주광역시도시공사사장 귀하